

(토론)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에 따른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 의회
의원 김 종 문

사회적 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선진 외국사례에 비추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 일천한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의 원천이 한데 모아지지 않고 장애인 고용, 도시빈민 자활, 재정지원 일자리, 취약계층 자립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과 관할청 부서의 난립으로 활성화의 원천 에너지도 충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시민사회와 당사자 조직을 통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와 자원을 가진 정부와 지자체의 반응은 미온적이거나 기회추구적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전 방향이 참여와 공유, 협동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경제적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민간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력관계 조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의 사적이익보다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호혜경제이자 지역중심 풀뿌리 경제로서 사회적 공유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경제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경제 비전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장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경제와 시장경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경제 운영모델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5년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성장생태계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조직과 긴밀히 협력하여 2020년까지 4만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창업하여 사람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한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충남도 사회적 경제 인프라 구축과 성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조직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실체화하여 가동시킬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혁신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주민의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연대의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사회적 경제 민간조직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법」과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제의 정비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경제를 이끌 전문가를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주고 지역과 현장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잘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를 지도/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부문 사회적 책임조달을 확대하고 사회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정부/지자체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주체인 중소기업·상공인들과 민간조직들이 협력하여 만드는 민/관협치의 경제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조달을 정부조달 대비 최소 10%로 확대하고 정부/지자체는 지역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생협, 중소기업 중앙회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사회적 기금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정 규모의 사회적 경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충남의 경우 최소 5000억 규모의 사회적 경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5060세대의 인생이모작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인생설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기존

의 경제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다. 청년이 일자리, 주거문제,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에 적극 나서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과 5060세대의 인생이모작 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면 사회문제도 해결하고 우리경제도 활력을 찾을 것이다.

일곱째,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한다. 사회적 경제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주도가 아닌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더욱 효과적이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지역에서 중앙까지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인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정책추진체계를 통합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별, 업종별, 부문별, 전국적으로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다.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생존의 절벽과 미래의 불안에 갇혀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따뜻한 삶을 열어주는 출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사회적 경제 토대를 잘 구축해야 한다.